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4402)
-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5245)
-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
-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5669)

상정된 안건

- |  |   |
|--|---|
|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1 |
|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3 |
| o 조정위원장(문정복) 인사                                    | 4 |
| 2.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4402) | 4 |
| 3.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5245) | 4 |
| 4.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                          | 4 |
| 5.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5669) | 4 |

(20시03분 개의)

○ 조정위원장 직무대행 김대식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출석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제가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먼저 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사진행을 위원장께 넘기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20시04분)

○ 조정위원장 직무대행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문정복 위원 저를 추천합니다.

○ 조정위원장 직무대행 김대식 문정복 위원님을 추천한다고요?

○ 문정복 위원 예.

○ 조정위원장 직무대행 김대식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위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데, 지금

현재 연장자인 제가 이것은 임시의장을 맡는 거지요?

○문정복 위원 예.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그러면……

○고민정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임시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원래 이게 관례상 최연장자가 맡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고민정 위원 그건 임시위원장이고.

○문정복 위원 임시고, 임시위원장.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임시의장?

○고민정 위원 예.

○문정복 위원 예.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조정훈 간사도 안 오고 아무도 지금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문정복 위원 그런데 8시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그래서 좀 오면 선출하지요.

○문정복 위원 아니, 의사일정을 지금 진행을 하셨잖아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진행을 했으니까.

○고민정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정회를……

○고민정 위원 이름을 불러 주셔야 제가 발언을 하지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민정 위원 저희가 아까 8시 한 일이 분 정도까지는 그냥 사담을 좀 나눴고 그다음부터는 임시위원장이신 김대식 위원장께서 방망이를 두드리시면서 오늘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셨기 때문에 이미 개의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을 호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절차에 따라 한 사람을 추천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협치를 해 왔고 그동안에 좀 했는데, 사실상 지금 문정복 간사님 계시고, 우리 조정훈 간사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산회를 하고……

○문정복 위원 아니아니 이미, 잠깐만.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조정훈 간사가 참석을 함과 동시에 하는 걸로 하지요.

○문정복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

이미 위원장님께서 개의를 하셨고 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조정훈 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위원장을 뽑을 건지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그러니까요 진행했으니까……

○문정복 위원 산회는 안 돼요, 지금은.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진행했으니까, 우리 조정훈 위원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07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그러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금 급한 일정으로 오실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좌관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게는 안 돼요. 이 산회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아니, 그러니까 일단 산회를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고민정 위원 아니, 해봤자 효력이 없는데.

○문정복 위원 효력이 없는 산회를 선포하면……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왜 없어요?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왜 안 돼요?

○문정복 위원 효력 안 돼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아니, 왜요?

○문정복 위원 아니아니……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아니, 지금 해 가지고 중간에 의사 그게 안 되니까 서로 가, 그러면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

○문정복 위원 아니, 왜냐면 위원장님께서 이미 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시던 중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정회를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회를 하시면 법적 절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의 오류로 인해서 저희가 위원장을 새로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일단 저는 산회를 선포했으니까 일어서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냥 저희끼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것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문정복 위원 예, 알고 계세요.

○고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끼리 그냥……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문정복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20시32분)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문정복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위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문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준혁 위원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이 조정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문정복, 저를 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복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

### ○ 조정위원장(문정복) 인사

○조정위원장 문정복 본 위원이 조정위원장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20시33분)

○조정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2항부터 5항까지 대안 포함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대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초·중등교육법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안,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안 그리고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안, 3건과 고민정 의원 그리고 문정복 의원 발의안을 지난 소위에서 심사해서 의결한 대안, 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민정·문정복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서지영 의원안은 기존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과용도서 규정상 교과용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상향 입법하는 취지에서 서지영 의원님 안은 동의하지만 고민정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안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을 들었고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김준혁 위원 먼저 손 드셨습니다.

○**김준혁 위원** 고민정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지요, 발의자니까요.

○**고민정 위원**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할게요.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제가 AIDT 교과서와 관련돼서 지난 7월 24일 상임위 당시에도 이주호 장관에게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정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관련해서 이 내용이 교과서냐 아니면 교육자료냐라고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 소프트웨어들도 교육 교과서에 포함되느냐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했었지만, 그런데 장관 입장에서는 2023년 10월 달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인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교과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교과서가 8월에 나와서 최소 한 학기 정도 학교에 있는 일선 선생님들이 이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교과서는 일선 교사 선생님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본 적이 없고요. 이 보지도 못한 내용을 교과서로 선정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백번 천번 양보해서 최소 6개월이라도 시연한 후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시행한 후에 만약에 이것이 교과서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고 법령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무리하게 교과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제가 차관님께 마지막으로 정말 물겠습니다.

이게 교과서로 하느냐 교육용 자료로 하느냐의 싸움은 강제성을 띠게 하느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게 만드느냐 그 차이입니다. 교과서는 강제성이 있는 거고 교육용 자료는 선택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AIDT 개발 아예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이 AIDT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적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런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조정훈 간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AIDT가 교육용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실증적인 증거도 없고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쓰는 경우에 오히려 문해력 문제가 생기고 학습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고 실험 결과들도 많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것을 교육용 자료로 하게 되면 쓰는 친구들과 안 쓰는 친구 사이에 교육 격차가 생긴다? 오히려 이 AIDT를 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의 교육 격차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실제로 현재 우리 교육 시장에서 IB 교육과정을 쓰는 학교도 있고 안 쓰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교육 격차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는 저작권료를 안 내는데 교육용 자료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료에 있어서 폭등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 교과서도 교육용 자료도 모두 다 저작권료는 내게 돼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꼭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셋째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정부 측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판결에 의해서도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입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 때문에 겁을 주는 것은 오히려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원래 이것은 교과서였다고도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교과서였으면 2023년 10월 24일에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왜 고치셨습니까? 교과서가 아니니까 대통령령으로 고쳐서라도 교과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3년 8월에 검정 실시 공고 당시에는 교과서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교과서로 시행령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무리하게 AIDT를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택적인 영역을,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법은 필요 없다’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차관께서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저로서는 이 법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조정위원장 문정복** 다음,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의 내용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지난 6월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이 제출되었고요. 10월에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서 그 도입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 점 외에도 이것도 많이 논의됐던 거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것, 그 외에도 서책형 교과용도서보다도 교육 자원의 투입이 너무 많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사실 어제 신문에 난 건데, 경향신문에서도 ‘종이교과서로 회귀하는 북유럽’ 이야기하며 제가 스웨덴의 자료를 실제로 찾아서 다 번역도 이렇게 해 봤는데요. ‘스웨덴에서는 학교 환경에 과도한 디지털화가 학교 현장을 망치고 있다’ 그러면서 ‘태블릿이나 디지털 학습 등에 의존해 왔던 교육을 인쇄된 책이나 독서, 손글씨 연습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리고 독서를 더 중시하는 그런 세계적인 움직임이 일단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한 번만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 교과용도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교육자료는 아까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효과성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용도서로 해서 강제적으로 학교가 다 사용하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이 너무나 노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드린다면 이것도 지금 신문에 났는데 윤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향신문에 오늘 자로 났는데 ‘독도는 분쟁지역이다’라고 AI 교과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전되면서 그런 오류를 줄여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벌써부터 교육적이지 않은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도 지금 도드라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미루어 봤을 때 교과용도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정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현재 4명이지요. 4명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및 5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항과 3항을 조정 통합한 의사일정 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조정안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직원과 위원회 직원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준혁 문정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오석환